

2026

선박안전관리사 선박관계법규

엠북 해사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8시간 30분 완성

도서명 : 선박안전관리사 선박관계법규

ISBN : 979-11-7393-080-5

발간일 : 2025-09-18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5,000원



선박안전관리사 선박관계법규

[목차]

- 제1편 선박입출항법(p3)
- 제2편 선원법(p34)
- 제3편 선박직원법(p118)
- 제4편 선박안전법(p136)
- 제5편 해양사고심판법(p181)
- 제6편 해운법(p219)
- 제7편 해사안전기본법(p262)
- 제8편 해사교통안전법(p275)
- 제9편 국제선박항만보안법(p349~384)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편 선박입출항법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입항/출항 및 정박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4장	삭제
제5장	예선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제7장	수로의 보전
제8장	불빛 및 신호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법상 용어]

시도지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약어]

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입출항은 입항, 출항

정박등은 정박, 정류

협의회는 예선운영협의회

청장은 해양경찰청장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입출항 지원, 선박운항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규정

2. 정의

가.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

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하 수상구역등)

- 무역항의 수상구역(이하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

다. 관리청

-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입출항 등 행정업무하는 다음 행정관청
- 국가관리무역항은 장관
- 지방관리무역항은 시도지사

라. 예선

-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 접안,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

마. 우선피항선

-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 주로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다음 선박

1) 부선

-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으면 예인선과 부선 포함
-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

2) 주로 노와 샷대로 운전하는 선박

3) 예선

4)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한 자 소유 선박

5) 해양환경관리업이나 해양폐기물관리업 등록한 자 소유 선박

-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

6) 상기 이외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

바. 정박

-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놓고 운항 멈춤

사. 정박지

-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

아. 정류

-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 운항 멈춤

자. 계류

-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음

차. 계선

-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계류

카. 항로

-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수로

타. 위험물

1) 화재/폭발 등 위험 있거나 인체, 해양환경에 해 끼치는 다음 물질

-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유해성 물질

- 산적액체위험물

2) 선박 항행,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

파. 위험물취급자

- 위험물운송선박 선장과 위험물 취급하는 자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입출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법 따름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 입항/출항 및 정박

4~9조

1. 출입 신고

가)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에 신고

- 관리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법하면 수리 요

나) 다음 선박은 출입 신고 불요

- 총톤수 5톤 미만

- 해양사고구조 용

- 수상레저기구 중 국내항 간 운항 모터보트, 동력요트

-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

- 관공선, 군함, 해양경찰함정 등 공공 목적으로 운영

- 도선선, 예선 등 선박 출입 지원
- 연안수역 항행 정기여객선(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선박)으로서 경유항 출입
- 피난을 위해 긴급 출항
- 항만운영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가 출입 신고 면제

다)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가안전보장에 필요시 선장은 관리청 허가받음

2. 정박지의 사용 등

가) 관리청은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 종류/톤수/홀수, 적재물 종류에 따른 정박구역이나 정박지 지정/고시 가능

나)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려는 선박(우선피항선은 제외)은 정박구역이나 정박지에 정박

(예외)

- 해양사고 피함
 - 고장 등 선박 조종 불가
 - 인명, 급박한 위험 있는 선박 구조
 - 해양오염 등 발생/확산 방지
 - 선박 안전운항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가 인정
- (비고) 상기 사유시 선박은 지정/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 불요

다) 정박구역,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선박의 선장은 즉시 관리청에 신고

라) 우선피항선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우려 있는 장소에 정박등 못함

3. 정박의 제한 및 방법 등

가) 선박은 수상구역등에서 다음 장소에 정박등 못함

- 부두/잔교/안벽/계선부표/돌핀, 선거의 부근 구역
- 하천, 운하, 좁은 수로, 계류장 입구 부근 구역

나) 다음 경우 상기 장소에 정박등 가능

- 해양사고 피함
- 고장 등 선박 조종 불가
- 인명, 급박한 위험 있는 선박 구조
- 허가 받은 공사/작업에 사용

다) 선박 정박등 제한 외에 무역항별 수상구역등 정박등 제한은 관리청이 고시

라)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체없이 예비용 닻을 내릴 수 있게 닻 고정장치 해제, 동력선은 즉시 운항하도록 기관 상태 유지 등 안전 조치

마) 관리청은 정박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수상구역등에 정박하는 선박에 정박 장소/방법 변경 명령

4. 선박의 계선 신고 등

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수상구역등에 계선하려는 자는

- 관리청에 신고
- 관리청 지정 장소에 계선

나) 관리청은

- 신고 내용을 검토해 적법하면 수리 요
- 계선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해 소유자나 임차인에 안전 유지 인원의 선원 승선 명령 가능

5. 관리청의 선박 이동명령

- 무역항의 효율적 운영이나,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 명령 가능

6. 관리청의 선박의 피항명령 등

가) 자연재난 발생(우려)시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선박소유자나 선장에 명령 가능

나) 관리청은 접안, 정박 금지구역 설정 등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 해운업자, 관리청 인정자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운영 가능

7. 관리청의 선박교통의 제한

-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 안전을 위해 항로나 구역을 지정해 선박교통 제한, 금지 가능
- 항로/구역 지정한 때 위치, 제한/금지 기간 공고

제3장 항로 및 항법

10~18조

1. 항로 지정 및 준수

- 관리청은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무역항과 수상구역 밖의 수로를 항로로 지정/고시 가능
- 우선피항선 외의 선박은 수상구역등 출입, 통과시 지정/고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

2. 항로에서의 정박 등 금지

가. 선장은 항로에 선박을 정박등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부유물을 내버려두면 안됨

나. 예외

: 1)에서 3)의 사유로 선박을 항로에 정박등시키려면 관리청에 신고 요

- 1) 해양사고 피함
- 2) 고장 등 사유로 선박 조종 불가
 - 선장은 조종불능선 표시 요
- 3) 인명, 급박한 위험 있는 선박 구조
- 4) 허가 받은 공사/작업에 사용

3. 항로에서의 항법

가.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항행

- 1) 항로 밖에서 항로에 들어오거나 항로에서 항로 밖으로 나가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 항행

2) 항로에서 다른 선박과

- 나란히 항행못함

- 마주칠 우려시 오른쪽으로 항행

3) 항로에서 다른 선박 추월못함

- 추월하려는 선박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전하게 추월할 수 있다고 판단시
해상교통안전법상 방법으로 추월

4) 항로를 항행하는 위험물운송선박(급유선은 제외) 또는 흘수제약선의 진로
방해못함

5) 범선은 항로에서 지그재그로 항행못함

나. 관리청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특히 필요시 따로 항법 등 고시 가능

- 선박은 이에 따라 항행 요

4. 방파제 부근에서의 항법

- 수상구역등에 입항하는 선박이 방파제 입구 등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시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함

5. 부두등 부근에서의 항법

- 선박이 수상구역등에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이나 정박 중인 선박(이하 부두등)을

-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시 부두등에 접근해 항행,

-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시 멀리 떨어져 항행

6. 예인선 등의 항법

가) 예인선이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을 끌고 항행시 다음 방법 따름

- 예인선 선수에서 피예인선 선미까지 200m 내

- 예외: 다른 선박 출입 보조시

- 한꺼번에 3척 이상의 피예인선 끌지 않을 것

나) 범선이 수상구역등 항행시 돛을 줄이거나 예인선이 범선을 끌고 가게 함

7. 진로방해의 금지

- 우선피항선은 수상구역등이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 방해못함

- 공사 등이나 선박경기 등 행사 허가받은 선박은 수상구역등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 방해못함

8. 속력 등의 제한

가) 선박이 수상구역등이나 수상구역 부근 항행시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을 속력으로 항행

나) 청장은 선박이 빠른 속도로 항행해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있는 수상구역등에 대해 관리청에 항행 최고속력 지정 요청 가능

-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정/고시 요

다) 선박은 고시된 항행 최고속력 범위내 항행

9. 항행 선박 간의 거리

- 수상구역등에서 2척 이상의 선박이 항행시 충돌을 예방할 거리 유지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5장 예선

23~31조

1. 예선의 사용의무

- 관리청은
- 항만시설 보호,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 관리청 고시 규모 이상의 선박에 예선 사용하게 함
- 선박이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예선사용기준 고시 가능

2. 예선업의 등록 등

가. 예선업(무역항에서 예선업무 하는 사업) 하려면 관리청에 무역항별로 등록

- 등록한 사항 변경시도 같다

나. 등록기준

1) 예선은 자기소유예선(자기 명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자기 소유로 약정된 리스예선 포함)으로서 다음의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적합

a) 인천(경인 포함), 평택/당진, 대산(태안 포함), 군산(장항 포함), 여수(광양 포함), 마산(삼천포, 통영, 진해, 고현, 장승포, 옥포, 하동 포함), 부산, 울산, 포항, 보령

- 예항력 합계 2천마력(사업구역을 경인에 한정시 1천마력), 1척 이상(1천마력 이상 1척 포함)

b) 목포(완도 포함), 동해/묵호, 제주(서귀포 포함), 속초(삼척, 옥계, 호산 포함)

- 예항력 합계 1천마력, 1척 이상(1천마력 이상 1척 포함)

(비고) 예항력은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른 마력

2) 예선추진기형은 소방향추진기형일 것

3) 예선에 소화설비 등(펌프, 소화총, 화학소화재탱크) 구비

4) 예선 선령 30년 이하, 등록/변경등록 당시 선령 12년 이하

- 예외) 관리청이 예선 수요가 적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무역항에 등록, 변경등록하는 선박과, 해양환경공단이 해양오염방제 대비/대응을 위해 선박을 배치하고자 변경등록시

다. 1개의 무역항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거나, 2개 이상의 무역항이 인접한 경우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 가능

라. 관리청은 예선업무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시 예선업이 등록된 무역항의 예선이 아닌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하게 함

3. 예선업의 등록 제한

가) 다음은 예선업 등록못함

-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류 또는 발전용 석탄의 화주

-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와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

- 조선사업자

- 상기에 해당 자가 사실상 소유/지배하는 법인(이하 관계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인

- 거짓/부정 등록/변경등록,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등록 취소 2년 미경과

나) 예선업 권리/의무 승계한 자에 상기 규정 준용

다) 관리청은 안전사고 방지와 예선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만내 예선 대기장소에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없으면 예선업 등록 거부 가능